

이천시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신효승(이천시부발읍 아미리 607)외 7,835인
2. 소개의원 : 이종률(부발읍) 의원
3. 주요근거법령

(1) 청원관련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제9조(청원서의 처리)
- 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 이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청원의 이송처리보고)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0조(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등)

4. 청원취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근거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세대학교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 조사하도록 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중간보고에 따라 대상지역이 청원인의 청원대상지역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75-3번지를 포함하여 4개 지역으로 압축되게 됨에 따라, 동연구소가 평가대상항목으로 선정한 19개 항목의 불합리성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으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한 재평가의 요구

5. 검토내용

○ 청원관련

본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청원서)의 제출규정에 근거하여 이종률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것으로 청원의 형식, 절차상 상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여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제4호(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고 동법 제5조 및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규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청원내용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관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
- 동법 제9조 1,2항과 관련하여 2000.12.1 입지선정계획(안)을 공고하였고, 동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01.2.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였으며, 동조 제4항과 관련하여 2001.3.2 입지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발주하여 입지타당성조사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바 입지선정 형식·절차상 현행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청원은 대상인 이천시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은 이천시장에 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바 청원법 제9조(청원서의 처리) 제1항, 지방자치법 제6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 제1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공정성, 과학성, 정확성, 참여성, 투명성 등의 전제 하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